

2022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소방장·교) 시행 공고

2022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소방장·교)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강원도지사

I. 시험개요

○ 시험일정

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소방장	9. 3.(토) 10:00 ~ 11:15	미정(춘천시 소재 예정) * 추후 별도안내	9. 21.(수) 14:00 예정
소방교			

※ 입실마감은 시험실시건물 내 09:30까지이며 09:31:00 출입구폐쇄, 응시불가

○ 선발예정인원

구분	인원(명)
소방장	30
소방교	75

※ 상기 시험일정 및 선발예정인원은 코로나19상황, 결원발생 등 사정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공고 안내

○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비고
소방장	소방법령Ⅱ, 소방법령Ⅲ, 소방전술	객관식 4지
소방교	소방법령 I, 소방법령Ⅱ, 소방전술	선다형 75문항

○ 응시자격

- 필기시험 실시일('21.9.4.) 기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1년)에 달할 것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제1항 또는 동 규정 제36조(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출제 범위(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별표 8 참고) **[붙임 1,2]**

- 소방법령 I : 소방공무원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징계령, 소방공무원 기장령

- 소방법령 II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법령 III :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전술 : 화재진압·구조·구급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기술 및 기법 등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별표1 참고)

※ 법령관련 문제는 필기시험일(2022. 9. 3.) 현재, 시행중인 법령에서 출제

II. 원서접수 등

1.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 **7. 18.(월) 10:00 ~ 7. 21.(목) 18:00**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접수취소는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

- 접수방법 : 119고시 홈페이지(<http://119gosi.kr>) 접수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사진등록 : 사진파일(JPG, PNG, BMP), 해상도(100dpi이상), 반명함 증명사진(3×4cm)
- 사진제한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응시수수료 : 없음
- 접수확인 : 응시자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 확인(로그인 → 마이페이지)
 - ※ 확인내용 : 본인 소속 시·도, 이름, 임용일자, 전화번호 등
 - ※ 응시자 개인정보 불일치, 연락 불능, 응시자격 미충족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 잘못된 정보를 입력한 응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조회

- 조회기간 : 7. 25.(월) ~ 8. 1.(월)
- 조회대상 : 소방장·교 승진시험 원서접수자
- 조회기관 : 원서접수 대상자 소속기관
- 조회내용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임용제한 사유, 소속 등 적합여부
- 조치사항 : 응시자격 미충족자 승진시험 불가 조치(응시표 출력 제한)

3. 응시번호 부여 및 응시표 교부

응시번호 부여	➡	응시표* 교부(출력) <small>*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2호 서식</small>
8. 5.(금) 한		8. 24.(수) 14:00 이후
❖ 접수번호 순에 의하여 응시번호 부여		❖ 119고시 접속 → 로그인 → 마이 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이 응시표 사진과 응시자 대면 확인. 승진시험 응시자는 필기 시험 당일 반드시 응시표를 소지할 것

Ⅲ. 필기시험

1. 필기시험

○ 일 시 : 9. 3.(토) 10:00 ~ 11:15(75분간)

※ 입실마감은 시험실시건물 내 09:30까지이며 09:31:00 출입구폐쇄, 응시불가

○ 장 소 : 미정(춘천시 소재 예정) * 추후 별도안내

○ 시험방법 :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시험과목

- 소방장(교→장) : 소방법령Ⅱ(25문항), 소방법령Ⅲ(25문항), 소방전술(25문항)

- 소방교(사→교) : 소방법령Ⅰ(25문항), 소방법령Ⅱ(25문항), 소방전술(25문항)

※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별표8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컴퓨터용 검정 싸인펜)

* 소방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기간만료전)

※ 자격증, 주민등록초(등)본, 신분증 사본, 사진촬영물 등 상기 신분증 외 인정 불가

2. 문제문의 운영 [붙임 4]

○ 기 간 : 9. 3.(토) 16:00 ~ 9. 4.(일) 24:00

○ 방 법 : 119고시 홈페이지(119gosi.kr)에서 신청

○ 절 차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문의서(붙임 4) 첨부*

* 응시자는 ‘필기시험문제 문의서’ 작성 첨부

○ 자격요건 : 승진 필기시험 응시자만 가능

○ 내 용 : 출제문제 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문의

*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3. 최종합격자 발표

- 공고일시 : 9. 21.(수) 14:00 예정
- 공고방법 :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 ⇨ 참여/알림마당 ⇨ 인사채용
- 공고내용 : 응시현황, 관서별 합격자 현황 및 합격자 명단

<시험의 합격결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34조 ·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22조

- 합격기준 : 필기시험은 매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최종합격자 : 필기시험 성적(60%)와 당해 계급에서의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총평정점(40%)를 합산한 성적* 의 고득점 순위에 의해 결정
 -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 순위결정
 - ①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
 - ②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③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④ 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

♣ 불합격자 필기시험 점수 공개

- 공개기간 : 9. 22.(목) 16:00 ~ 9. 23.(금) 18:00
- 공개방법 : 119고시에서 공개(접속 → 성적조회 → 본인인증 → 응시번호)

IV.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시험일정 및 정보는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추후 시험장소 별도안내
-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공지합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 포기**로 간주

* 시험장은 시험실시 건물이며, 학교 교문이 아님 / 09:31:00 출입구 폐쇄

<시험장 폐쇄 시간 기준>

- 시간 기준: 10:00 시험은 08:30에 개방하여 09:30:00까지 입장 가능
09:31:00부터 시험실시 건물 주 출입구 폐쇄
※ 시험 당일 시험장 개방 전까지 입실 불가
- 입구 기준: 시험실시 건물(학교 교문 인정불가)

- 시험장의 물품 등을 파손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하며, 시험장(학교) 내에서 절대 금연입니다.
- 시험원서(인터넷 원서접수 시) 및 각종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 지정된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보건소 등 보건당국의 허가를 득한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 응시
 - 자가격리자, 확진자 별도시험 응시 사전 신청 [붙임 6, 7, 8]
 - ① 신청일시 : 9. 2.(금) 18:00까지
 - ※ **상기 신청일시 이후 접수전에 대해서는 응시불가**, 정상 사전신청자는 별도장소 지정하여 개별통보
 - 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사전 신청은 상기 일시 내 신청하여야 하고, e-메일 도착일시가 상기 지정일시를 경과하였거나 미신청 시 시험응시가 불가하며, 추후 미신청 자가격리자, 확진자가 지정 시험장 응시 시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 통보(감염병예방법 위반 시 경찰통보)

2. 시험당일 유의사항

- 응시표에 명기된 시험장소 및 응시번호별 시험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미지참** 응시자는 시험 **응시 불가**합니다.

- 인 정 : 소방공무원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불인정 :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 전자신분증, 사진(복사) 등

○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문제지 배부 후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휴대금지물품 예시 :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몰래카메라, 전자계산기 등

○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가능하며,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휴대가 불가능합니다.

○ 책상, 벽 등에 필기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3.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붙임 3]**

○ **필기시험의 득점은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라 산출**됩니다.

○ 필기시험 OMR 답안지를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는 사용 가능하나, 채점 오류 등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타인에게 빌리거나, 받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

○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연필 또는 샤프, 적색펜을 사용하거나 답란에 잘못 기재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페이지수와 인쇄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문제지를 교체합니다. 교체 요청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답안지는 본인의 응시표를 확인 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안,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문제는 공개이므로,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지참하여 귀가 가능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실내에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은 시계로 부정확할 수 있으며 방송(벨)으로 안내되는 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지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지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필기시험 중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용히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습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험당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운영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4. 부정행위자 조치

- 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당해 소방공무원은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그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임용권자는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부정에 해당하는 행위(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준용)

▶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료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6.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7.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8.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9.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유사답안처리 및 무효답안처리 기준>

- ▶ 부정행위자 조치: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 준용
- ▶ 유사답안의 처리: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23조 적용
- ▶ 무효답안처리: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24조 적용
- ▶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준

■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무효답안처리 기준(제24조제5항)

- 시험지(문제지, 답안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대화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 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5. 기타사항

- 원서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응시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 등 증빙서류를 제시(지참)해야 합니다.
- 문자안내는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여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및 공고사항을 확인하지 않거나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는 모두 응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니,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안내사항은 **[붙임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휴일 제외)

- ◇ 원서접수 문의 :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90)
- ◇ 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 SE코리아 (070-4290-9611)
- ◇ 필기시험 문의 :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033-249-5363)

- 붙임
1. 「소방전술」 출제범위
 2. 「소방공무원법」 출제범위
 3. 답안지 작성 및 채점기준
 4. 필기시험문제 문의서
 5.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6. 코로나19 자진신고시스템 운영 안내문
 7.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8.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도시험용). 끝.

「소방전술」 출제범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 - 별표 1)

분 야	출제범위	비고
화재 분야	- 화재의 의의 및 성상	
	- 화재진압의 의의	
	- 단계별 화재진압활동 및 지휘이론	
	- 화재진압 전술	
	- 소방용수 총론 및 시설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등	
	-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화재분야)	소방교 및 소방장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 안전관리의 기본	
	- 소방활동 안전관리	
	- 재해의 원인, 예방 및 조사	
	- 안전 교육	
	- 소화약제 및 연소·폭발이론	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 위험물성상 및 진압이론	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 화재조사실무(관계법령 포함)	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구조 분야	- 구조개론	
	- 구조활동의 전개요령	
	- 군중통제, 구조장비개론, 구조장비 조작	
	- 기본구조훈련(로프, 확보, 하강, 등반, 도하 등)	
	- 응용구조훈련	
	- 일반(전문) 구조활동(기술)	
	-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구조분야)	소방교 및 소방장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 안전관리의 기본 및 현장활동 안전관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소방교 및 소방장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구급 분야	- 응급의료 개론	
	- 응급의학 총론	
	- 응급의료장비 운영	
	- 심폐정지, 순환부전, 의식장애, 출혈, 일반외상, 두부 및 경추손상, 기도·소화관이물, 대상이상, 체온이상, 감염증, 면역부전, 급성복통, 화학손상, 산부인과질환, 신생아질환, 정신장애, 창상	소방교 승진시험에서는 제외
소방차량 정비실무	- 소방자동차 일반	
	- 소방자동차 점검·정비	
	- 소방자동차 구조 및 원리	
	- 고가·굴절 사다리차	

※ 소방전술 과목의 출제 세부범위는 시험일 기준 당해 연도 **중앙소방학교에서 발행** 하는 **신입교육과정의 공통교재**로 한다.

「소방공무원법」 출제범위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체계도

연번	출제범위
1	소방공무원법
2	소방공무원임용령
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4	공무원고충처리규정
5	공무원보수규정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7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8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9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10	소방공무원 징계령
11	소방공무원 기장령

답안지 작성 및 채점기준

□ 득점 산출기준

- 답안지는 OMR 스캐너로만 판독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
- 점수산출은 OMR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름
- 채점관련 기타사항은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름

□ 인적사항 표기

- 답안지를 받으면 본인의 인적정보(성명, 응시번호, 필적감정)를 정확히 기재(표기)하고, 시험 감독관의 확인(감독관 서명)을 받아야 함.
- 감독관 서명이 없는 답안지는 무효로 함.
-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 반드시 기재(표기)사항 빠짐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표기), 모든 기재(표기)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
- 인적사항 및 책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무효처리 등)

□ 답안지 표기방법 및 주의사항

-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예시>와 같이 “●”로 정확하게 표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

<예시>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 ⊗ ◑ ◒ ◓ ◔ ◕ ◖ ◗ ◘ ◙ ◚ ◛

-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한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적색(청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 될 수 있음
- 불량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사용, 답안란 마킹 잘못, 답안지 여백 낙서 등으로 채점불가 시 일체 정정이 불가하며 응시자 본인 책임
- 답안지는 훼손, 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훼손해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는 사용 가능하나, 채점 오류(번짐, 뜯김 등) 등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

[붙임 4]

필기시험 문제문의서

문 제 문 의	성 명		응시번호	
연 락 처	휴 대 전 화			
	전 자 우 편			
응 시 분 야	응 시 시 도			
	응 시 분 야			
문 의 과 목	해 당 과 목			
	문 항 번 호	번		

<출제문제>

<사유 및 관련근거> - 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

<응시자 의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KF94, 코와 입 막음)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실 안팎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시간 외에도 다른 응시자와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 시험 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응시자를 확인할 때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 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관찰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시험단계별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 →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 → 별도 장소 응시(별도 시험장,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자진신고재확진, 자가격리 등 유의사항 안내문

1.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자진신고시스템 안내문에 따라 본인의 시험응시일 전(前)일 18:00까지 사전 신청을 완료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시스템에 의한 자진신고 해당자 】

- ①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자*로 시험일까지 격리 중인 응시자
 - * 자가격리자: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시설 내 접촉자
- ②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이고,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 검사(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

2. (신청기간) 본인의 시험응시일 전(前)일 18:00까지

※ 본인의 시험응시일 전(前)일 18:00까지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등이 도착하지 않으면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체력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3. (신청방법) ① 본인거주지역 관할보건소 담당자 또는 병원, 생활치료센터 담당자(의사 등) 에게 상기 사실 및 시험응시 가능여부 확인 후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유선(033-249-5363) 연락

② 첨부서류 e-메일 제출

4. (제출서류) ① (공통)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붙임 7]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붙임 8]

③ (병원입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확진자) 시험응시 가능 의사소견서(필요시)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확진(재택치료)	①, ②	1. 본인 해당되는 서류 미제출 시 별도시험 접수 미인정 2. 승진시험은 응시지역의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실시
확진(병원, 생활치료)	①, ②, ③	
자가격리	①, ②	

※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이고,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는 ①, ② 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보내실 곳)

◆ e메일 : tmddlf4505@korea.kr ⇨ e메일 발송 후 유선연락

6. (시험안내) 별도시험 응시 신청자에게 개별 유선 통보

7. (응시방법) 도보, 자가차량, 방역택시 * 대중교통 이용금지

8. (유의사항) 확진 및 자가격리자 방역지침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

인적사항

계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응시번호 (응시분야)	
현주소지			
격리기간		관할보건소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청사유			

제출서류

※ 서류 제출현황 (제출 시 에 '√' 체크)

- ① (공통) 코로나19 별도시험 응시 신청서(붙임 6)
-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붙임 7)
- ③ (병원 입원·생활치료센터 입소 확진자) 시험 응시가능 의사 소견서(필요시)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확진(재택치료)	①, ②	1. 본인 해당되는 서류 미제출 시 별도시험 접수 미인정 2. 시설 내 응시는 시험운영본부 사정으로 제한될 수 있음
확진(병원, 생활치료)	①, ②, ③	
자가격리	①, ②	
※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양성이고, 시험일까지 코로나19 PCR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응시자는 ①, ② 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방역당국 지침 및 시험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본인은 [2022년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도 시험용)

코로나19 확진·자가격리자 등의 시험응시 여부 확인을 위하여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휴대전화, 주소,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활용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질병관리청, 관할 보건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응시자 확진·자가격리 여부 확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기본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활용 동의 여부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취급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강원도소방본부	소방장	백승일	033-249-5363	tmddlf4505@korea.kr	소방인사팀장

2022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